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1869 |
|----------|-------|

발의연월일 : 2026. 10. 12.

발 의 자 : 장동혁 · 박준태 · 성일중  
임이자 · 김도읍 · 백종현  
김은혜 · 김소희 · 곽규택  
정희용 · 강명구 · 이진숙  
김상훈 · 이종배 의원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구분하여 자연생태계와 경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자연공원 체계는 산림 중심의 보전형 공원이 기본 모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국민의 휴양 · 여가 수요 증대와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적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연안 · 갯벌 · 습지, 하천 · 호수 등 다양한 생태환경의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국민의 휴양 · 관광 기능을 조화시키는 자연공원의 새로운 유형으로 기존 자연공원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신설하여 생태관광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연공원의 범위에 광역시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과 하천, 호수 등 수생·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휴양 증진을 위하여 제36조의10에 따라 지정된 공원국립휴양공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 나. 국립휴양공원 지정은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준용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국립휴양공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10 신설).
- 다. 국립휴양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휴양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의 업무를 정함(안 제36조의14 신설).
- 라. 국립휴양공원에 용도지구(휴양지구, 생태지구)를 새롭게 신설하여 용도지구별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15 신설).
- 마. 국립휴양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립휴양공원 내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0 신설).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국립공원·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시립공원·구립공원·지질공원 및 국립휴양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국립휴양공원”이란 연안, 갯벌, 습지, 하천, 호수 등 국가적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휴양 증진을 위하여 제36조의10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제4장의3(제36조의9부터 제36조의2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의3 국립휴양공원의 지정·운영

제36조의9(적용범위) 국립휴양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제4호의5·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3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

조의4까지,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의9부터 제36조의20까지, 제41조, 제42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4조부터 제86조까지로 한다.

제36조의10(국립휴양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휴양공원의 지정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국립공원에 관한 제4조 및 제4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국립휴양공원으로 적합한 지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립휴양공원은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있고,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36조의11(국립휴양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휴양공원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휴양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국립휴양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국립휴양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의12(국립휴양공원계획의 결정) 국립휴양공원계획의 결정에 관

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6조의13(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 협의) 국립휴양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제36조의14(국립휴양공원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휴양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휴양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립휴양공원 조사 및 연구
  2. 국립휴양공원 지식·정보의 보급
  3. 국립휴양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여가·휴양·치유 활동의 운영·지원
  5. 국립휴양공원 자치협의기구의 운영·지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립휴양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15(국립휴양공원 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국립휴양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1. 휴양지구: 국립휴양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레저·휴양에 대한 편의 제공 및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2. 생태지구: 자연환경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 관리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휴양지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 2. 생태지구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나. 공원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

③ 공원관리청은 휴양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④ 국립휴양공원에서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경우에 한한다.

제36조의16(금지행위) 국립휴양공원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36조의17(자연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국립휴양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18(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휴양공원 내 일정한 지역을 기간을 정하여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36조의17에 따른 조사 결과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 및 국립휴양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국립휴양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수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19(점용료 등의 징수) 국립휴양공원의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립공원에 관한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제36조의20(비용부담의 원칙) ① 국립휴양공원의 국유지 용지 구성에 관한 비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휴양공원 내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국립휴양공원의 생태계 및 수질 관리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휴양공원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6조제3항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거나 제36조의16 또는 제36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자연공원”이란 <u>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郡立公園)</u> 및 <u>지질공원</u> 을 말한다. | 1. ----- <u>국립공원 · 도립공원 · 광역시립공원 · 군립공원(郡立公園) · 시립공원 · 구립공원 · 지질공원</u> 및 <u>국립휴양공원</u> ---.                                                      |
| 2. ~ 4의4. (생    략)<br><u>&lt;신    설&gt;</u>                      | 2. ~ 4의4. (현행과 같음)<br>4의5. “ <u>국립휴양공원</u> ”이란 연안, 갯벌, 습지, 하천, 호수 등 국가적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휴양 증진을 위하여 제36조의10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
| 5. ~ 11. (생    략)<br><u>&lt;신    설&gt;</u>                       | 5. ~ 11. (현행과 같음)<br><u>제4장의3 국립휴양공원의 지정·운영</u>                                                                                                  |
| <u>&lt;신    설&gt;</u>                                            | <u>제36조의9(적용범위)</u> <u>국립휴양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제4호의5·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3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u>                                      |

<신 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의9부터 제36조의20까지, 제41조, 제42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4조부터 제86조까지로 한다.

제36조의10(국립휴양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휴양공원의 지정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국립공원에 관한 제4조 및 제4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국립휴양공원으로 적합한 지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립휴양공원은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있고,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36조의11(국립휴양공원위원회  
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  
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휴  
양공원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휴양공원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  
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국립휴양공원  
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  
괄승계인을 국립휴양공원위원회  
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12(국립휴양공원계획의  
결정) 국립휴양공원계획의 결정  
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36조의13(다른 법률에 따른 지  
역·지구 등의 지정 협의) 국립  
휴양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  
른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에는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제36조의14(국립휴양공원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휴양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휴양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립휴양공원 조사 및 연구
2. 국립휴양공원 지식·정보의 보급
3. 국립휴양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여가·휴양·치유 활동의 운영·지원
5. 국립휴양공원 자치협의기구의 운영·지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립휴양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15(국립휴양공원 용도지

구) ① 공원관리청은 국립휴양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

로 결정한다.

1. 휴양지구: 국립휴양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레저·휴양에 대한 편의 제공 및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2. 생태지구: 자연환경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지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2. 생태지구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나. 공원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

③ 공원관리청은 휴양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④ 국립휴양공원에서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신 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경우에 한한다.

<신 설>

제36조의16(금지행위) 국립휴양공  
원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27  
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36조의17(자연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국립휴양공원의  
자연 자원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  
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6조의18(출입 금지 등) ① 공원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휴  
양공원 내 일정한 지역을 기간  
을 정하여 사람의 출입 또는 차  
량의 통행을 금지·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  
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신 설>

1. 제36조의17에 따른 조사 결과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  
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 및 국  
립휴양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  
우

2. 국립휴양공원에 들어가는 자  
의 안전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멸종위기종의 복  
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수질 개  
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  
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  
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  
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  
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19(점용료 등의 징수) 국  
립휴양공원의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립  
공원에 관한 제37조 및 제38조

